

활공장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활공장(훈련장 포함)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공장에 대한 시설 및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통한 안전비행체계 구축 및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의 안전 비행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전국에 소재 된 모든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훈련 및 비행 장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조(활공장의 등급)

협회는 활공장에 대하여 그 규모(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훈련장등)와 시설(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을 기준으로 [별표1]과 같이 등급을 정하여 관리한다.

제4조(조직)

활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활공장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
- ② 안전관리위원 5명 이내(활공장별 특성에 따라 그 위원의 수를 증원할 수 있다.)
- ③ 비행통제관 정 1명, 부 1명
- ④ 환경위원: 1명

제6조(자격 및 임무)

안전관리위원회의 임원은 자격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활공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조종자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덕망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2) 안전관리위원은 협회의 지도조종자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교육기관의 장 또는 클럽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필하여 해당 활공장의 안전 비행 관리를 도모한다.
- 3) 비행통제관은 안전관리위원 중 해당 비행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1인을 안전관리위원장이 선임하여 해당일 비행 통제, 안전 비행 관리등 제반 활공장 업무를 총괄한다. 비행통제관에게는 협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해당 활공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행에 대한 비행 승인, 금지, 정지의 권한이 부여되며, 비행 후 비행자의 로고북에 해당 비행에 대한 비행 인정 서명을 할 권한을 갖는다.
- 4) 환경위원은 환경부로부터 위촉받은 명예항공환경감시원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공장에 대한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와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제7조(활공장의 등록)

- 1) 활공장별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관리하는 활공장에 대하여 활공장 등록신청서[별표2]를 각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2) 협회는 신청된 활공장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활공장 등록증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행의 승인 및 인정)

협회는 활공장의 안전비행 권장을 위하여 해당일 통제관의 서명이 있는 비행에 한하여 그 비행을 인정한다.

- 1) 통제관에 의해 승인된 비행에 한하여 비행자의 안전사고시 보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다.
- 2) 통제관의 서명이 있는 비행에 한하여 협회는 각 등급별 자격 검정시 이를 인정하며, 각 종 기록 비행에 있어 그 기록을 공인한다.

제9조(활공장 이용 통제)

안전한 활공장 운영을 위하여 이륙전 안전 점검 사항, 비행의 필수 조건, 안전 장구의 착용여부, 비행안전수칙등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칙을 기준으로 비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 위반 시 비행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통제관이 판단하여 국지 기상 급변 및 악 기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활공장에 대한 비행 통제를 할 수 있다.

1) 이륙전 점검 사항

1. 비행자의 건강상태, 심리 상태
2. 주 착륙장 및 비상착륙장에 대한 확인 및 지형지물에 대한 사전 인식
3. 풍향 및 풍속, 거스트(Gust)등의 파악 및 기류 상황 분석
4. 이륙장 상황 확인(이륙방향 및 장애요인 점검)
5. 자신의 기체는 자신이 직접 점검한다.
 - 1회 비행에 앞서 10회 점검하는 태도를 기른다.
 - 행글라이더의 점검부분 : 각 부분의 골조, 와이어, Sail, 바텐 곡률 등의 상태 및 손상여부
 - 패러글라이더의 점검부분 : 캐노피, 산줄, 라이저, 하네스, 각 종 연결링등의 상태 및 손상여부
6. 잘 맞는 하네스를 착용한다.
7. 비행계기 및 카메라등의 확인(Setting)
8. Hang & Para Check !
9. 다른 비행자의 위치, 선회방향 및 비행 경로 확인

2) 비행의 필수 조건

1. 음주 비행(비행 전날의 음주 포함), 단독비행은 절대 불가
2. 비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 및 체력관리에 유의
3. 공인된 사람에게 지도 받도록 할 것
4. 감항 검정(안전기준에 합격)이 확인된 기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
5. 낙하산등의 안전 장비는 필히 착용하도록

3) 안전 비행 수칙

1. 구름속으로 들어가는 비행은 하지 말것!
2. 성장하는 적란운에 접근하지 말것!
3. 보이지 않는 곳에 불시착 했을 경우 기체를 접지 말고 구조를 기다릴 것!
4. 착륙장을 벗어날 때 착륙장의 위치 연계도로망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착륙함
5. 사나운 짐승이나 새끼가 있는(또는 임신한) 가축 근처에 착륙하지 않도록 한다.
6. 기체 및 하네스등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불가
7. 불완전한 장치나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 없이 토크링 하지 말것!
8. 기체 및 장비의 피로도, 점검 및 수리에 대한 내용을 기체상태 점검란에 기록
9. 씨멀 또는 리지 소아링을 여러대가 동시에 비행할 때는 선행자의 선회방향을 확인하고 진입하며 선행자와 같은 방향으로 선회 할 것!
10. 항상 다른 비행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11. 서로 마주쳤을때는 우측비행
12. 추월시 우측으로
13. 직각으로 마주쳤을때는 좌측의 비행자가 양보
14. 능선이나 절벽의 사면에서 마주치게 되었을 경우 산의 바깥방향으로 선회하기 쉬운 기체가 선회하여 피한다.
15. 고성능기와 저성능기가 마주쳤을때는 고성능기가 양보한다.
16. 상승풍을 받아 상승하고 있는 기체쪽으로 진입하지 말것
17. 위에 있는 기체가 먼저 피한다.
18. 풍속이 25 Km/h(7 m/sec) 이상인 경우 패라글라이더 비행금지!
19. 풍속이 30 Km/h(8.5 m/sec) 이상인 경우 행글라이더 비행금지!

제10조(비행 통제 방법)

비행의 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행금지
- 2) 일시 비행 정지
- 3) 해당일 비행 금지

제11조(활공장 유지 및 보수)

협회는 각 활공장별로 안전 비행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활공장의 유지 보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활공장 관리기금은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기금은 1회 비행에 한해 5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상벌)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항별 비행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이외의 상벌에 대하여는 활공장 안전관리위원회의 재청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1) 안전장구 미착용시: 안전 장구 착용시 까지 비행 금지
- 2) 경미한 안전 수칙 위반 사항: 3개월 비행 정지
- 3) 안전수칙 위반 사항: 6개월 이상 최소 1년간 비행 정지
- 4) 중대한 안전 수칙 위반 사항: 자격 정지

제13조(사고처리)

활공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비행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 후송 조치를 취하며, 사고 경위를 상세히 협회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받는다.

제14조(환경보호 및 질서 유지)

활공장에 대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는 산불예방조치, 오물투기 금지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차량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비행을 위한 이륙장 및 착륙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회는 이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명예 항공 환경 감시단을 발족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취소)

활공장이 관리 소홀로 비행 조건이 악화되거나 불안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활공장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7년 7월 1일 제 정

2000년 2월 26일 제1차 개정

[별표1]

활공장 등록 신청서

활공장명		개장일	
소재지	주소	주소	
	소유자		
관리처	관리관	주소	
	연락처		
특징			
시설현황	진입로		
	이륙장		
	착륙장		
	훈련장		
	응급시설		
	편의시설		
	기상시설		
	무선시설		
	클럽하우스		
	기타		
비행조건	리찌폭		
	상승기류빈도		
	비행가능일수		
	이륙가능풍향		
	기타		

※ 첨부서류: 시설현황표 1부, 활공장 항공 사진 1매, 활공장 중심 지형도(1/25,000) 4부
기타 홍보물

상기 활공장을 활공장 관리규정에 의거 등록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활공장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
대한행패리글라이딩협회

[별표1]

활공장의 시설 기준표(안)

시설명	시설내용	등급별 시설 기준				비 고	
		A급	B급	C급	D급		
훈련장	보유경사(도)	12/20/30/45	15/30/45	15/30	15		
	고도(미터)	100	70	50	30		
	이륙방향(도)	4방향(360)	3방향(270)	2방향(180)	1방향(90)		
	슬로프폭(미터)	75	50	30	20		
	슬로프길이	400	280	200	120		
활공장	착륙장	면적(평방미터)	200*200	100*100	100*100	100*100	주변장애물없을것
	이륙장	면적(평방미터)	50*50	30*30	20*20	20*20	
		고도(미터)	500이상	300이상	200이상	100이상	
	진입로	차로	2차선이상	1차선이상	우마차로	등산로	
		모노레일/리프트	유	유	무	무	차로가 없는 경우
	비행 조건	리찌비행폭(미터)	300이상	200이상	100이상	100이하	
열기류빈도(회/1일)		수시	5	3	3		
부대시설	클럽 하우스	숙소	100명이상	50명이상	30명이상	10명이상	
		식당	100명이상	50명이상	30명이상	10명이상	
		탈의실	20명이상	10명이상	5명이상	1명이상	
		샤워실	20명이상	10명이상	5명이상	2명이상	
		강의실	50명이상	30명이상	20명이상	10명이상	시청각 시설포함
		사무실	유	유	-	-	
		무선기지국	유	유	유	유	
		기상관측소	유	유	-	-	
		응급치료실	유	유	유	유	
	보관 창고	장비실(미터)	30*30	20*20	10*10	8*5	
		수리실	유	-	-	-	
		수납장	유	유	유	유	
	이·착륙장 시설	화장실	유	유	-	-	
		대피소	유	유	유	유	
		식 수	유	유	유	유	
	화재예방시설		유	유	-	-	
환경정화시설		유	유	-	-		
제3자배상책임보험가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상기 내용은 활공장의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기준(안)임